

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지원 -

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『현지화 지원사업』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한국 농식품 수출을 돕고자 합니다. 수출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.

□ 지원대상 :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
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 지원 제외

□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
지원 품목	○ 농식품	
지원 기간	○ 연중수시(~11월말)	
지원 한도	○ 업체당 연간 10백만원	
지원 내용	○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비용 전액 지원	
	지원분야	지원(자문) 내용
	법률일반	• 계약서 작성 자문,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, 현지법인 설립 등
	통관	•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(품목기본정보, 세금 등) • 수출(통관)가능여부, 제품 통관·검역 사전검토 등
	관세	• 관세율(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), HS코드 분류 등
	SPS	•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·검역 기준, 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
	기타	• 기타 현지 비즈니스(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) 지원 정보
	※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(내용)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※ 장기간의 연구·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대상 범위에서 제외	
대상지역	○ 한국 농·수산물식품 주요 수출거점 23개국 - [동북아] 중국(홍콩 포함), 대만, 일본 - [동남아]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라오스, 태국, 미얀마, 인도 - [미주]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브라질 - [중동] UAE, 바레인, 터키, 카자흐스탄 [유럽] 프랑스, 독일, 벨기에 *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	
유의사항	☞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「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」 제출 필수 * 미제출시 지원 제외	

□ 신청 안내

○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

- 해외 현지기관(법률사무소, 관세사 등)이 전문적인 답변 제공



※ 전문기관 리스트 : <붙임> 참조 (분기별 업데이트 예정)

□ 제출서류

- (공통)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On-Line 신청
- (중화권 신청업체) 對중국 제품 통관사전검토 신청서
- (aT지원사업 최초업체) 무역통계정보이용동의서 [우편제출]
 - * aT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<붙임>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우편 제출
- 진행과정 중 요구되는 별도의 정보자료 등

□ 문의처 : aT 수출정보부 hjh@at.or.kr

- * 유선문의 없이 메일문의만 받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<해외지사별 문의처>

국가/지사	담당자	e-mail(연락처)	국가/지사	담당자	e-mail(연락처)	
중국	베이징	송두류	미국, 북미	뉴욕	고운지	atbomiako@gmail.com
	상하이	정하패	미국, 남미	LA	박지현	jjeehp@gmail.com
	칭다오	박춘경	EU	파리	윤해지	haejyun.hy@gmail.com
	청두	왕성	중동	두바이	이종범	ryan@at.or.kr
	홍콩	이나래	베트남, 라오스	하노이	김정엽	vietnam@at.or.kr
대만	홍콩	김미현	인니, 말련	자카르타	최형순	hschoi@at.or.kr
일본	도쿄	김형표	태국, 미얀마, 인도	방콕	허보민	bmhur@at.or.kr
	오사카	정현철				

2019. 3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